

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아이수루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본 조례 제정 이유를 살펴보면, 현재 관련 조례 상위법인 「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문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전인적 인격체로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.
- 다만, 인문교육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및 홍보를 강화하고, 인문학 실천학교 지정·운영에 대한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 등

인문교육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여 교육의 지원 근거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- 이에 안 제6조의 경우, 인문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하여, 양질의 인문교육 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- 또한, 안 제8조의 경우, 인문교육 진흥 사업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인문교육 수요조사 및 홍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- 안 제10조의 경우, 인문교육 우수사례 발굴에 대해 규정하여 인문교육 활성을 위해 학교장이 실시하는 인문교육 대상으로 우수사례 발굴 및 필요한 홍보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.
- 끝으로 안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통해 인문교육 진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부, 지자체,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